



서울고등법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2038659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5639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청소업을 영위함에 있어 'C'라는 표장(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4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대표이사인 D가 1999년 설립한 'E'를 모태로 하여 '가전생활용품 제



조·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11. 26. 그 상호를 '주식회사 F'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상호는 2005. 3. 15. '주식회사 G'로, 2006. 3. 30. 다시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H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D'라는 표지(이하 '원고 표지'라 한다)를 사용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5.경 'C'라는 상호(사업자 등록번호: D)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하면서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는 2014. 2.경 상호를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였으나(그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2014. 9.경에 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4. 7.경까지 피고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광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5 내지 17, 27, 28, 33, 34, 36 내지 38, 49호증, 을 제1, 3, 5,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표장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피고가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 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표지는 'H의 제조·판매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 표지와 유사한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청소업'에 피고 표장을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구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146,4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1, 2,



11, 12, 13, 27,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청소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2. 5. 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 표지는 'H의 제조·판매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2003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H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표지를 사용해 오고 있다.

② 그 매출 규모를 보면, 2005. 12.에 누적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2006년경에는 H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 말경에는 그 누적판매량이 1,000만 대에 이르렀다.

③ 한국갤럽이 2006년 실시한 H 브랜드 목록 조사에서 원고 표지의 'H'가 시장점유율, 선호도, 인지도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

④ 2003년경부터 원고와 'G'에 대한 기사가 국내 주요 언론에 다수 소개되어 왔다.

⑤ 원고 표지의 'H'는 K에 '1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L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다.

2)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가능성 여부

가) 피고 표장은 원고 표지와 동일한 'D'에 '청소'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청소'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청소업'을 나타낸다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없고, 반면 'D'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H의 제조·판매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피고 표장 중 수요자들의 주의를 끄는 요부는 'D'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표장은 'D'로 되어 있는 원고 표지와 유사하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8, 9, 10, 27, 28,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한 '청소업'이 원고의 영업이거나 이들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 표지는 적어도 2005년경부터는 'H의 제조·판매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

② 피고 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청소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청소'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표지와 완전히 동일하다.

③ 피고는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2. 28. 특허청으로부터 지정서비스업을 '건축물청소업' 등으로 한 'C' 서비스표의 출원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014. 7.경까지 피고 표장이 표시된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광고를 하였다.

④ '청소 도구인 H의 제조·판매업'과 '청소업'은 그 고객층이 중복되고 또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다.

⑤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에서 'D' 또는 'C'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관련 사이트로 검색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고를 원고와 관련된 영업조직으로 오인하는 수요자도 있었다.

3)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가) 따라서 피고가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영위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D'는 피고의 어머니인 M이 2002년경부터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면서 사용한 가명으로서 2004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청소업을 운영하였고, 2012. 6.경 피고가 어머니를 도와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원고 표지에 편승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을 제1, 8, 9, 15 내지 21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어머니 M이 2004년경부터 청소업을 영위한 사실, 위 을 제1호증의 표지에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내용은 을 제8호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 구체적인 작업 현장이나 일시, 순번 등의 기재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어 이들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D'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의무

1) 피고 표장 사용금지 의무

가)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청소업'에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2. 4. 그 상호를 'J'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피고 표장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N 지정서비스업을 '건축물청소업' 등으로 하여 'J' 서비스표의 등록을 받은 사실, 2013. 10. 24.경 피고 표장이 사용된 홈페이지에 상호, 홈페이지, 조직 등의 개편을 준비 중임을 공지한 사실, 2014. 2. 4. 'J' 홈페이지를 통해 'C'가 'J'으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한 이후부터 'J' 홈페이지를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는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2. 28. 특허청으로부터 지정서비스업을 '건축물청소업' 등으로 한 'C' 서비스표의 출원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014. 7.경까지 피고 표장이 표시된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광고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향후에도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의 예방'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 의무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되는 주지 표지를 부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표지를 사용하여 'H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피고는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이와 경제적 관련관계가 있는 영업인 '청소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의해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원고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계산해 보면, 피고의 매출액 1,952,232,000원에 원고 표지의 사용료 비율 7.5%를 곱한 146,417,000원이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해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해도 같은 금액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한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갑 제15 내지 26,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홈페이지의 누적 예약 건수(2014. 4.경까지 12,431건), 'C'가 아닌 'J'의 청소비용, 원고의 다른 상표 'O'에 대하여 상표사용료를 15%로 정한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약 건수 중 실제 계약이 체결된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매출액이 원고의 계산과 같이 1,952,232,000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뒤에서 보듯이 그 매출액 합계는 484,724,286원 정도이다), 또한 원고 표지의 사용료 비율이 7.5%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의 태양 및 기간(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 'C' 홈페이지의 누적 예약 건수(2014. 4.경까지 12,431건), 원고 표지의 주지성,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 영업 간의 경합 및 수요자의 중첩 정도, 원고가 피고와 같은 '청소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는 2015년경으로 보이는 점(갑 제31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피고가 'C'라는 상호(사업자 등록번호: I)로 '청소업'을 하면서 올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출액 규모(을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동작세무서장과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억 원으로 인정한다.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
2012.1기	21,293,100원
2012.2기	70,000,000원
2013.1기	99,294,682원
2013.2기	98,444,407원
2014.1기	127,005,456원
2014.2기	68,686,641원

합계 484,724,286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받아들인 부분인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종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인 2014.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부분인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